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지원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89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58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적 검토	4
나. 목적(안 제1조)	17
다. 정의(안 제2조)	19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28
마.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0
바.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6
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2
아. 부칙	46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58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4.

다. 회 부 일 : 2025. 10. 15.

2. 제안이유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

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는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둬(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시설안전 강소기업’ 및 ‘시설안전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지원 규정이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가.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4개 장,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 등 제5조 지원 대상 제6조 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7조 재정 지원 제8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3장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 제9조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강소기업·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제4장 보칙	
제12조 관리감독	
제13조 전담조직 설치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2) 제정 필요성

세계기상기구(WMO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구 지표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5°C 높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C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음.²⁾³⁾

국내 기후도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강수일수 감소 등 기후변화 경향이 뚜렷한데,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

1)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 이준이, “기후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국회사무처, 국회보, 2024.7. p.12.
중앙일보,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웠다…세계기상기구의 충격적 숫자들”, 2024.3.19.

3) 이는 인위적 지구온난화 경향에 자연변동성이 결합된 결과로, 현재 지구온난화 수준은 1.2°C로 평가됨. 지구온난화 1.2°C는 이미 매우 심각한 온도 상승 수준으로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해양에 흡수된 인위적 열에너지는 인류가 한 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1천 배에 달함.
(이준이, “기후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국회사무처, 국회보, 2024.7. p.12.)

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장마 또는 가뭄이 길어지고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 등에 관한 연구⁵⁾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에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의 침수, 대규모 정전, 교량 및 도로 파손, 제방 붕괴 등의 우려가 있고,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하구둑, 수문, 제방, 터널, 공항, 항만, 옹벽, 절토사면 등의 시설이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기반시설의 사용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약 31.7%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시설물이 약 27.5%로, 향후 10년 후에는 기반시설의 약 59.2%가 사용연수 30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외에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3.4.

5) 김원, “기후변화 대비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확보 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 정일원,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기초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참고

【 기반시설 사용연수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사용연수 미상	
합계	461,799	46,448	10.1	120,845	26.2	126,969	27.5	146,563	31.7	20,974	4.5
도로	105,817	10,208	9.6	27,868	26.3	32,408	30.6	26,373	24.9	8,960	8.5
철도	154,939	18,250	11.8	48,397	31.2	46,453	30.0	40,237	26.0	1,602	1.0
항만	1,632	158	9.7	455	27.9	431	26.4	582	35.7	6	0.4
어항	2,140	238	11.1	551	25.7	540	25.2	640	29.9	171	8.0
공항	667	292	43.8	195	29.2	125	18.7	51	7.6	4	0.6
수도	14,718	3,239	22.0	6,377	43.3	2,206	15.0	2,140	14.5	756	5.1
전기	138,053	11,984	8.7	31,274	22.7	40,799	29.6	53,765	38.9	231	0.2
가스	660	72	10.9	374	56.7	119	18.0	95	14.4	0	0.0
열공급	234	88	37.6	105	44.9	23	9.8	18	7.7	0	0.0
통신	215	0	0.0	0	0.0	53	24.7	162	75.3	0	0.0
공동구	39	6	15.4	12	30.8	4	10.3	17	43.6	0	0.0
송유	26	0	0.0	1	3.8	9	34.6	16	61.5	0	0.0
하천	22,113	1,308	5.9	4,164	18.8	2,686	12.1	4,749	21.5	9,206	41.6
저수지	17,045	103	0.6	195	1.1	253	1.5	16,494	96.8	0	0.0
댐	66	0	0.0	10	15.2	15	22.7	41	62.1	0	0.0
하수도	3,435	502	14.6	867	25.2	845	24.6	1,183	34.4	38	1.1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⁶⁾(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함)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

6) 「기반시설관리법」은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2018.12.31.에 제정되어 202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 5년 단위)·기반시설 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관리실행계획(관리주체, 매년)의 수립·시행,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평가·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으로 “성능개선”⁷⁾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⁸⁾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

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1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1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고시한 성능개선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보다 성능 개선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능개선을 실시하게 됨.

성능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¹⁰⁾

제4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정기안전 점검, 제2호 정밀안전점검, 제3호 긴급안전점검, 제4호 정밀안전진단, 제5호 성능평가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점검진단등의 결과
 2. 시간의 경과, 기후·환경 변화 및 기술개발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 기준
 3. 설계시점 대비 도로 교통량 등 수요 증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제1항의 별표8. 중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등 중점관리시설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4.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화 사항
- ② 단,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제4항에 따르는 경우는 본 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함에 있어 시설별 공용년수 또는 점검진단등에 따른 안전등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급 이하인 경우 전면개축 조치를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의 대상이 아닌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은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에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재량), 다만 공공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의무),

같은 법 제20조¹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¹²⁾에서는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있어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성능개선 소요 비용 및 해당 기관의

1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성능개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대한 관심 또는 인지 부족,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의 최저 기준 부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통한 성능개선 사업도 적정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후 성능개선 실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충당금이 적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장(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¹³⁾은 시·도지사가 기후변화·노

13) 제정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화 취약시설물 및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강화계획의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을 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국가는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¹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이력
3. 시설물의 안전강화 필요성 검토
4. 시설물별 안전강화 방법, 사업계획 및 기간
5.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강화계획을 제출받으면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금액 집행 등 전반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강화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록 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장 구성 체계】

제2장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 등

제5조 지원 대상

제6조 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7조 재정 지원

제8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다음, 안 제3장(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은¹⁵⁾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5) 제정안

제9조(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실증 지원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데이터가 연계·활용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강화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성·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디지털 안전관리 등의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실증 지원, 표준화 추진,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 등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강소기업·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소기업 또는 새싹기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급·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업 등을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 제3장 구성 체계】

제3장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

제9조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중소기업·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이는 기후변화에 취약점이 있는 기반시설과 사용년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여건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안전 개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 분야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성능개선 제도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반시설 안전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며,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및 노후화에 취약한 시설물 중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국가가 집중적·선제적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과 재난·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안 제5조(지원 대상) 및 제7조(재정 지원)¹⁶⁾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국고사업의 포괄 보조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¹⁷⁾와 관련하여 국가의 전체적·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통일성 등 제고, 개별 법률에 특정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

16) 제정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7) 제정안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규정 시 유사 사례 확대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 가능성 등
사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으로, 제정안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은 안 제2장(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시·도지사의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 및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계획의 수립·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장(안 제9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설안전 관련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1조의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은 이같은 사항들이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다.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이하 “취약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붕괴, 전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이하 “위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중 폭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디지털 안전관리”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말한다. 5. “안전강화”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 또는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개축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시설안전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시설안전 새싹기업”(이하 “새싹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시설물,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 도로안전 위험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안전강화, 시설안전 강소기업, 시설안전 새싹기업의 뜻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시설물”을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와 하위 법령¹⁸⁾에 따르면,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¹⁹⁾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방재시설(하천·저수지·댐), 환경기초시설(하수도)의 15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1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공급시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 범위】

구분	범위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항만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같은 조 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국가어항·지방어항으로 한정한다)
라.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나.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만4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한정한다)
라.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마.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바.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사. 송유설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방재시설	
가. 하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다목적 댐은 제외한다)

구분	범위
나.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다목적 댐은 제외한다)
다. 댐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자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바, 제정안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반시설을 규율 대상으로 하되, 특히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음, 안 제2조제2호는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²⁰⁾의 영향으로 붕괴, 전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 인정되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안 제2조제3호는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을 「도로법」 제2조제2호 나목²¹⁾에 따른 도로 안전시설 중 폭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이하 “취약시설물”이라 함)”과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이하 “위험시설물”이라 함)”은 안 제5조(지원 대상) 및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²²⁾에서 각각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로 함께 규정되고 있는데,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1)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2) 제정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취약시설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강화계획 수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특히 폭염, 폭우, 강풍 등으로 파손 또는 전도되는 등의 경우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강화계획 수립 및 비용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2조제4호는 “디지털 안전관리”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²³⁾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건설 분야에서는 로봇틱스, 인공지능(AI),²⁴⁾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²⁵⁾ 사물인터넷(IoT)²⁶⁾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

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4) AI(Artificial Intelligence)

25)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기술 등의 활성화 및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실증 지원, 디지털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정의한 것으로 이해됨.²⁷⁾

다음, 안 제2조제5호는 “안전강화”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 또는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개축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강화, 안전강화계획, 안전강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안전강

26) Iot(Internet of Things)

27) 유사 입법례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인용하여 ‘산업디지털 전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화”의 개념을 정의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²⁸⁾

다음, 안 제2조제6호는 “시설안전 강소기업”을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안 제2조제7호는 “시설안전 새싹기업”을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의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²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성장성과 유망성 등 기준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

28) 참고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유지관리, 성능개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로 하여금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강화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³⁰⁾으로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정안에 따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기반시설관리법」³¹⁾ 등 다른 법률과의 적용 우선 순위에 있어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강화에 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30)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 등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이력 3. 시설물의 안전강화 필요성 검토 4. 시설물별 안전강화 방법, 사업계획 및 기간 5.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강화계획을 제출받으면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금액 집행 등 전반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강화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구성되며,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³²⁾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

3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21~2025년) 】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43.6	45.3	45.0	43.3	43.2
서울특별시	75.6	76.3	75.4	74.0	73.6
경기도	57.3	61.6	60.5	55.1	55.7
세종특별자치시	58.8	56.9	57.2	57.5	54.3
인천광역시	50.3	52.8	52.4	49.6	49.2
울산광역시	49.6	48.7	49.8	46.3	46.1
부산광역시	46.1	46.9	46.0	45.1	42.7
대구광역시	44.7	47.9	47.4	44.3	41.9
대전광역시	39.9	42.4	42.3	41.7	41.1
광주광역시	40.9	41.1	42.3	40.7	39.8
경상남도	33.5	32.8	33.7	33.6	34.3
제주특별자치도	32.7	32.8	33.3	34.0	33.1
충청남도	32.3	33.1	33.6	32.4	32.2
충청북도	28.3	30.2	32.1	30.4	31.8
강원특별자치도	24.5	24.7	25.4	25.2	25.7
경상북도	24.9	25.6	25.3	24.6	24.4
전라남도	22.2	24.2	23.9	24.4	23.7
전북특별자치도	23.1	23.8	23.8	23.5	23.6

※자료: 국토교통부

*주- 2025년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으로 기재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

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강화계획의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³³⁾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7조는 국가로 하여금 안 제6조에 따라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도지사의 안전강화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해당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비용 지원 등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절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안 제8조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라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3) 기획재정부는 2025.10.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6.1.2.부터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개편될 예정인바, 제정안 심사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³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계획 이행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점,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³⁵⁾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예비타당성조사

3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3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³⁶⁾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에 따른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계획 이행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3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2025.3.25., 제정, 2026. 3. 26. 시행 예정)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 제9조(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실증 지원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데이터가 연계·활용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강화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성·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디지털 안전관리 등의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실증 지원, 표준화 추진,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 등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강소기업·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소기업 또는 새싹기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제 정 안
으로 정한다.

안 제3장은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되며,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실증 지원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데이터가 연계·활용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관리법」은 제8조³⁷⁾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³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³⁹⁾ 「가상융합

3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8)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3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

산업 진흥법」, 4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41) 등은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 분야의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 관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안 제11조는 시설안전 분야의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⁴²⁾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외에,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설물 안전강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과 역량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42)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설안전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시설안전 새싹기업**”(이하 “**새싹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유사 입법례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⁴³⁾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성장성과 유망성 등 기준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4장 보칙
제12조(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안전강화 사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사업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또는 안전강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또는 결과 확인을 위하여 세부 수행계획, 지원금액 사용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전담조직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 안전강화사업의 총괄 관리 3. 안전강화사업의 재원 조달 및 조정 4. 안전강화사업의 현장 점검 및 결과 확인 5.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제도 발굴 및 추진 5. 디지털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6.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7.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규제개선 검토 및 처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강화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4장은 보칙 규정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일부의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위임 및 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일부의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강화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안전강화 사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사업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또는 안전강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지원한 사업의 부실 수행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로 「기반시설관리법」 제25조⁴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4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및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음, 안 제13조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안전강화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안전강화사업의 총괄 관리, 재원 조달 및 조정, 현장 점검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제도 발굴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안전강화계획 제출과 그에 따른 사업 지원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업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바, 전문적이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 관련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⁴⁵⁾이 있음.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부칙

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10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조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⁴⁶⁾에 따른 시·도지사의 안전강화계획 수립 및

46) 제정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이력
3. 시설물의 안전강화 필요성 검토
4. 시설물별 안전강화 방법, 사업계획 및 기간
5.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강화계획을 제출받으면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강화계획에 대한 승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⁴⁷⁾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강화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해당됨.

제정안이 동 조항들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정책이 10년의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미리 밝혀 예측가능성을 제고함⁴⁸⁾과 아울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 사업을 유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금액 집행 등 전반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강화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47) 제정안

제12조(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안전강화 사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사업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또는 안전강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또는 결과 확인을 위하여 세부수행계획, 지원금액 사용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30.

- 원칙적으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지속되고,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폐지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률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 별도의 폐지 절차가 없더라도 예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이 소멸된다. 당초 정책의 한시적 시행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폐지 절차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법률 규정만으로는 법률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의 안전강화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591